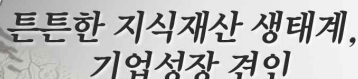



특허청





보도자료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과 장 박용주 042-481-5063 서기관 이종기 042-481-5070
	2015년 8월 5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8월 4일(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중국 지재권 활용 노하우 한 눈에 쏙!!

- 특허청,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 발간 -

특허청은 중국 진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재권 활용 및 보호 방법을 담은 『중국진출 기업을 위한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중국이 지재권 전문법원을 설립하고, 글로벌 지재권 보호 수준에 부합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자국의 지재권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지만, 모조품 등으로 인한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한중 FTA 타결 이후 한중간의 교역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나, 중국 진출 기업들의 '선(先) 진출, 후(後) 권리확보' 관행 등으로 인해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청은 중국 지재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중국 내 지재권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아 이 가이드를 발간하였다.

이 가이드에는 우리 기업이 중국 진출 전 꼭 알아야 할 지재산권 관련 사항, 무심사로 등록시켜주는 중국 실용신안 제도의 유용성, 지재산권 침해를 당했을 때 대응방법 등이 소개되어 있다.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이 진출에 앞서 미리 중국 지재산권 관리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 “가이드에 수록된 다양한 실제사례들이 이러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 가이드를 지역지식재산센터, 지방중소기업청, KOTRA,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에 배포할 계획이며, 가이드 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 042-481-5066으로 문의)

1. 중국 지재권 시장이 변하고 있다
 - 중국 지재권분야 압도적 세계 1위 질주
 - 지식재산전문법원 설립
2. 중국진출 우리기업 이것만은 알아야!
 - 중국의 지재권 보호환경 외국 기업에 불리한 건 아니다
 - 중국 지방보호 잘 알아야!
 - 중국에서의 특허권, 상표권은 한국 기업 명의로 확보할 것!
3. 중국 상표제도 이렇게 활용하자!
 - 상표출원부터 서두르자
 - 선 수출, 후 상표 확보 관행 바뀌야
 - 중문 브랜드 네이밍은 필수
 - 개정 상표법 적극 활용하자
4. 중국의 실용신안, 디자인 무심사제도 적극 활용하자!
 - 주요 외국기업은 중국 실용신안에 주목하고 있음
 - 중국 실용신안제도, 중국 진출기업에 왜 유리한가?
 - 실용신안 없이 중국에 진출하게 되면?
5. 중국에서 지재권 침해당했을 때 이렇게 대응하자!
 - 행정구제와 사법구제의 방법
6.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을 잘 활용하자

붙임 : 보호 가이드 사본 1부.

중국진출 기업을 위한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



CONTENTS	
중국 지재권 시장이 변하고 있다!	3
중국진출 우리기업 이것만은 알아야!	4
중국 상표제도 이렇게 활용하자!	6
중국의 실용신안, 디자인의 무심사제도 적극 활용하자	10
중국에서 지재권 침해 당했을 때 이렇게 대응하자!	13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을 잘 활용하자	17



중국 지재권 시장이 변하고 있다!

중국 지재권분야 압도적 세계 1위 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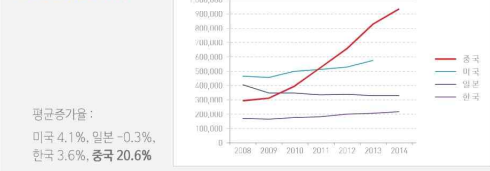
중국 특허출원량(82만 여 건)이 전 세계 특허출원(260만여 건)의 1/3을 차지('13년 통계 기준)

- 연평균('08~'14년) 증가율도 20% 이상의 높은 성장세
* 이는 동기간 중국 경제성장률(8~10%)의 2배를 훨씬 넘는 증가율

[지재권 분쟁사건 증가 추이]



[주요국 특허출원 추이]



상표출원 역시 200만 건 돌파('14년)하여 압도적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음(우리나라의 10배)
지재권 분쟁사건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음

- 특허분쟁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6.3%에 이르고, 상표분쟁은 연평균 증가율이 37.4%에 달함

지식재산 전문법원 설립

중국이 2014년 말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복경, 광저우, 상해에 지식재산 전문법원을 설립

- (관할사건) 특허·실용·디자인·영업비밀 등에 대한 1심 담당 및 상표·저작권 사건에 대한 항소심 담당

지식재산법원 설립으로 사법의 공정성이 제고되어 우리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



중국진출 우리기업 이것만은 알아야!

우리 기업의 중국 출원은 극히 저조

중국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재권 권리 확보가 필수적이나, 국내 기업의 출원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하여 극히 저조한 실정

- * '14년 중국 특허출원 : 한국 11,528건, 일본 40,460건, 미국 33,963건

중국 진출기업 중 중국에 지재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13.3%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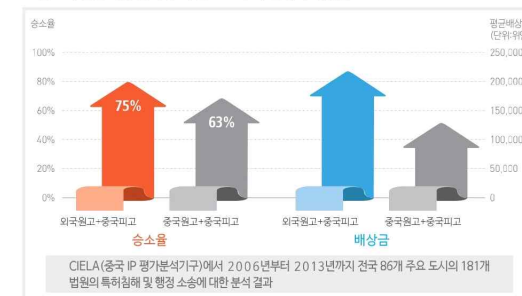
- * 특허청에서 실시한 지재권 피해침해실태 조사('12년 2,700여 개 업체대상) 결과

중국의 지재권 보호환경 외국 기업에 불리한 건 아니다!

통상적으로 외국기업이 지재권보호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불공평한 경쟁 환경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일까?

중국에서의 특허사건에서 중국 피고를 상대로 외국 원고와 중국원고의 승소율을 비교했을 때 외국 원고의 승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외국원고의 승소율이 75%로 중국원고의 승소율 (63%) 보다 높고, 배상금 판결도 외국 원고가 받은 배상금이 중국 원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중국 지방보호주의 잘 알아야

중국은 지방에 따라 언어, 정서, 상관습 등이 상당히 다름
 또한 지방법원마다 판결 결과가 상이하고 중국 국내기업에 대한 보호주의가 만연
 이러한 지방보호주의는 중국 진출 기업에 큰 장벽으로 작용

* 짝퉁 공장이 지역 경제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 짝퉁 제조업자를 발견했더라도 공권력 집행기관인 현지公安의 협조를 받는 일도 쉽지 않음

중국에서의 특허권과 상표권은 한국 기업 명의로 확보할 것!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의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중국 파트너 기업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중중 볼 수 있음

중국 파트너 교체 등 경영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중국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중국 파트너가 갖고 있어 문제가 발생



사례 |

중국에서 안마의자를 생산해서 전량 한국으로 수입하는 한국기업 A사가 “△△△”라는 상표를 중국파트너 기업 B사의 명의로 등록받았으나 나중에 중국 파트너를 바꿔 개량된 안마의자를 생산수출하였음. 이에 중국기업 B사가 세관에 상표권침해라고 신고하여 통관이 좌절



중국 상표제도 이렇게 활용하자!

상표출원부터 서두르자!

대 중국 수출에 비하여 중국 상표 출원은 매우 저조

- 우리나라가 대중국 수출은 1위 국가이나 상표출원은 7위에 불과



先 수출, 後 상표 확보 관행 바뀌어야!

중국 진출하기 전에 상표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상표브로커, 경쟁사 등의 무단 선등록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사례 |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K社は 2008년 중국 진출을 위해 상표 출원 준비중, 국내 A투자 증권에 근무하고 있던 O씨가 중국에 진출한 한 사실을 발견하고 권리 포기를 명목으로 O씨에게 약 2천 5백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후에 중국 포동 1호점을 오픈

중문 브랜드 네이밍은 필수!

중국은 모든 외래어를 중국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므로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인들에 친숙한 중문 브랜드 네이밍이 매우 중요**

- 간혹 '영문'만을 출원하는 기업도 있는데, 이 경우 유사한 발음의 중국어 상표로 도용 가능성이 높고, 한글 상표는 문자로서 인식하지 못함



우수 사례

국내 의류 업체인 "베이직하우스"의 중국어 이름인 百家好(바이쩌아하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뜻으로 기업의 이미지와 영문 발음의 호응을 고려한 것

"뚜레주르"의 중국어 이름은 多樂地日(뚜어러즈르), 중국어 발음이 뚜레주르와 거의 비슷함. 의미도 '빵을 먹어'즐거움이 많은 날' 또는 '매우 즐거운 날'로 원어인 'Tous les Jours'와 완전히 일치

상표권 보호에 관심을 갖자!

빠앗긴 상표권을 찾는 것이 급선무!

- 이익신청, 무효심판 등을 통해 빠앗긴 상표를 찾을 수 있지만 비즈니스 타이밍을 놓칠 우려가 있다면 협상도 하나의 방법
- 협상시에는 무효심판 등을 병행하여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사례

A社は OO프랜차이즈 업체로서, 중국 등 해외 진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중국 진출을 추진하던 중 상표브로커에 의해 상표권이 선등록된 사실을 발견함. 무효심판 등 소송으로 갈 경우 비즈니스 타이밍을 놓칠 우려가 있어 무효심판과 함께 상표권 양수 협상을 병행 추진(2014년)

모조품 피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단속' 추진!



사례

의류업체인 Z社は 중국 항저우 내 모조품 유통 정보를 입수하고 IP-DESK의 지원을 받아 현지 단속 업체와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한 행정단속을 진행하여 신발·의류 등 약 5,400여 점(약 3억 원 규모)을 압수

모조품 피해가 심한 경우 '형사·민사소송'도 불사!

- 소송 전에 침해 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사례

스타벅스는 영문, 중문(상바커) 등으로 1994년 상표출원 후 중국내 약 140여 개 점포를 운영(2006년 기준), '상하이 상바커'가 커피 프랜차이즈 영업(38개 점포)을 하는 것에 대해 상표권 침해로 민사소송을 제소하고 약 50만 위안(약 6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함(2006년)

개정 상표법 2014.5.1 시행 적극 활용하자

그동안 가장 많은 문제가 되었던 **현지업체의 악의적 상표 무단 선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사례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A社は 중국 대형마트 입점 추진 중에, 기존 거래관계에 있던 해외 업체의 중국 현지상표 무단 선점으로 인한 입점계약 취소로 50억 원의 피해 발생

- 업무상 거래가 있거나 기타 협력관계로 인해 타인이 먼저 사용한 상표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상표의 출원이 금지

- 이로써,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하여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상표브로커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악의적 무단 선등록으로 피해를 입은 상표사용자의 경우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복경시 조양구 기중인민법원에서는 개정 상표법 시행 이후 중국에서 첫 번째로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악의적 무단 선등록 상표권자의 상표침해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음('14. 12. 8)



선사용 인정 판결

베이징에 점포 4개를 가진 베이징상단니 미용스튜디오는 '상단니(尚丹尼)'이라는 간판과 표지를 2008년부터 계속 사용해 왔으나, 동 미용스튜디오에서 근무한 적 있던 전(前) 종업원의 부인이 '상단니(尚丹尼)'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고 동 미용스튜디오를 상대로 '상단니(尚丹尼)' 글자의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에 대해 중국 법원은 상단니스튜디오는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2008년부터 줄곧 '상단니(尚丹尼)' 표지를 사용해 왔고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 활동도 전개해 왔기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 원고는 피고가 '상단니(尚丹尼)' 표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함

- 이처럼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경우, 상표 브로커가 상표를 악의적으로 무단 선등록 하더라도 원상표사용자에게 침해주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용한 제도임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 손해배상금이 대폭 인상됐다는 점도 주목

- 악의적 상표권 침해 시에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배상 가능함
- 과거에는 상표권자가 승소해도 침해 금액에 대한 증거부족으로 적절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개정안은 법정 손해배상금을 50만 위안에서 300만 위안으로 대폭 인상하였음

그러나, 개정 상표법이 우리 기업에 유리하다 할지라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중국 내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임

정부, 공공기관의 자원 서비스를 활용하라!

중소기업은 예산, 인력 등 모조품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

국내

- K-브랜드 컨설팅 지원(중문 브랜드 개발, 이익신청, 무효심판 등)
- K-브랜드 상담창구(상표 브로커 문의 대응 등)
- K-브랜드 뉴스레터(최신 법개정 사항, 판례, 피해 및 우수 사례 등)

해외현지

- 해외 공관: IP-DESK 5개 지역 영사관을 IP 중점 공관으로 지정
- KOTRA IP-DESK :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등 5개소
 - 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지재권 상담·모조품 대응 지원

자세한 내용은 (6. 정부 지원정책) 참고

중국의 실용신안, 디자인의 무심사제도 적극 활용하자

중국은 실용신안, 디자인은 특허와 달리 심사없이 등록시켜 줌

중국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 출원에 대해 초보심사(기초요건 심사)만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무심사제도를 운영

그만큼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권리확득이 쉽다는 얘기

일본, 미국 등의 주요 외국기업은 실용신안에 주목하고 있음

일본, 미국 기업은 최근 실용신안 출원을 급속히 늘리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중국 실용신안 출원은 극히 저조('14년 기준 한국 344건, 일본 3009건, 미국 1705건)

- 최근 5년간 증가율을 보면 한국은 10.0% 증가율로 일본(65.0%), 미국(18.0%)에 비해 낮은 증가율 보이고 있음

[주요 외국기업의 출원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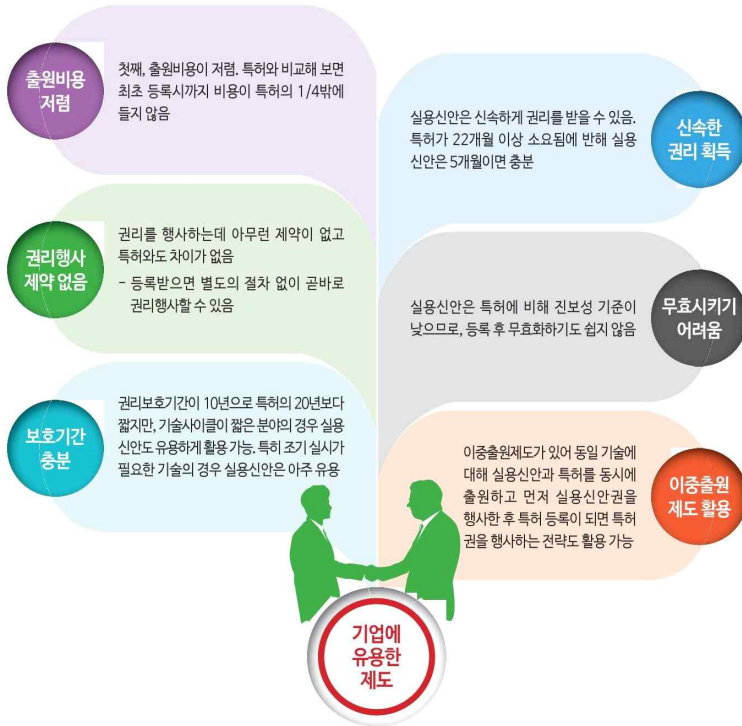


그럼 왜 일본, 미국 기업은 이렇게 실용신안 출원을 늘리는 걸까?

2013년 북경에서 개최된 지재권세미나에 참석한 일본 Seiko Epson 기업의 지재권 담당자는 그 원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 기업이 실용신안출원을 늘리는 것은 중국 실용신안권의 보호 정도가 특허권과 별 차이가 없음에도 오히려 비용은 적게 들고 권리행사기간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중국 실용신안제도, 중국 진출기업에게 왜 유리한가?



중국 특허와 실용신안 비교

	특 허	실 용 신 안
심 사	실 질 심 사	형 식 심 사
존 속 기 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심사처리기간	약 22개월	약 4.3개월
출원비용 (최초 등록시까지)	총 4,350위안(약 76만원) *출원료 950, 심사청구료 2,500, 등록료 900	총 1,100위안(약 19만원) *출원료 500, 등록료 600

실용신안 없이 중국 진출하게 되면?

실체심사 없이 등록된, 중국기업의 엄청난 양의 실용신안권('15. 3월 현재 유효 실용신안권리 236만 건)으로 인해 소송 당할 가능성이 농후함

* 중국은 실용신안에 대해 초보심사(기초요건 심사)만 실시하므로, 중국의 경쟁기업 역시 실용신안권 확보가 매우 용이함



사례 |

2010년, 스마트폰에서 손가락 터치를 인식하는 장갑(중국 실용신안 미등록)을 중국 온라인쇼핑몰 알리바바를 통해 막 팔기 시작한 한국의 중소기업한테 느닷 없이 특허권리 침해경고장이 날아들었는데, 이 장갑의 '실용신안특허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서너 개 중국기업·개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보낸 것. 알리바바로부터 일방적인 판매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이 업체는 회사 법무팀 통해 특허권 공방에 나섰으나 막대한 시간적·금전적 비용부담을 고려해 대응 포기, 사업을 접게 됨

중국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보유한 실용신안권을 통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는 등 권리행사를 어렵게 하거나 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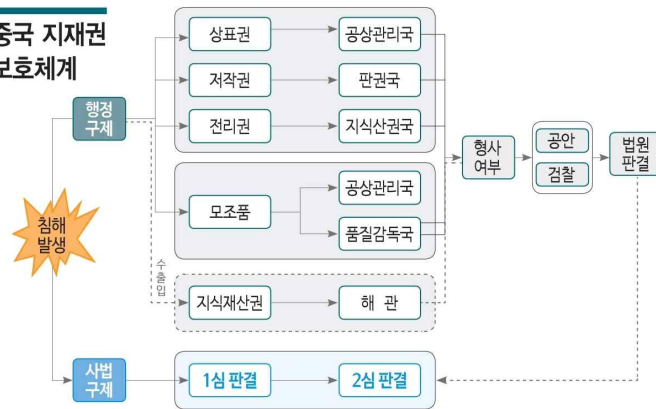
사례 |

중국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디스플레이장비 업체 선두기업인 한국의 A社, 중국 진출 후 위 핵심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A社의 경쟁사인 중국의 B社는 A社의 중국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함.

A社가 특허유효하다는 선고를 받았음에도 중국 경쟁사들은 유효결정 이후에도 일반 개인을 청구인으로 내세워 선행기술 증거만 1~2개씩 바꿔가며 무차별적으로 무효심판 제기, A社는 대리인 비용부담 등으로 결국 무효심판 대응 포기

중국에서 지재권 침해 당했을 때 이렇게 대응하자!

중국 지재권 보호체계



중국 지식재산 보호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행정보호'와 '사법보호'의 이중적인 보호(双軌制, 쌍궤제)

* 예컨대, 등록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을 때 직접 법원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표업무 담당 행정기관인 공상행정관리국에 청구하여 침해자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두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음

행정구제와 사법구제의 차이점

	행 정 구 제	사 법 구 제
시 간	단기에 처리가능	처리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음
비 용	비용 저렴 단 변호사 선임 시에는 비용 대폭 증가	비용 비쌈
절차난이도	간단	복잡
증거요건	비교적 엄격함	매우 엄격함
집행력	집행력이 약함	집행력이 강함
손해배상	판단하지 않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

중국지재권기업을 위한 중국지재권활동 및 보호 가이드

12
13

행정 구제

주요 행정단속기관	
행정기관	단속내용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권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
지식산권국	전리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침해행위, 전리허위표지
품질기술감독국	원산지 표시 위반, 제조처 허위표시, 품질표시 허위기재
세관	전리권, 상표권을 침해하는 수출입화물의 통관행위

지식산권국을 통한 행정단속

! 전리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행정단속은 실효성 높지 않아 오իր러 사법 구제가 더 효율적!

단속 공무원의 기술적 전문성이 높지 않아 특허침해 사건의 경우 침해여부 판단 등의 어려움으로 행정단속에는 한계가 있음

공상행정관리국을 통한 행정단속

! 상표권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은 실효성 높아 적극 활용할 필요!

행정단속 절차



조사 및 증거자료 확보가 단속의 성패, 효과를 좌우!

- 단속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모조품의 생산공장, 중간 보관창고, 도매상, 말단 판매상 등 전체 유통경로에 대하여 일제히 단속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철저한 사전 조사와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
- 따라서 기업이 직접 하기보다 단속전문회사에 맡겨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세관을 통한 행정단속

💡 **중국의 세관조치는 모조품의 수입금지뿐만 아니라 수출의 금지도 가능!**

자신의 권리를 세관에 등기하여 두면 매우 유익하고 효과적!

- 세관에 자신의 권리를 등기하면 적국 각지의 수출입세관에 해당 내용이 온라인으로 통지되므로 각 수출입세관의 자발적인 단속을 기대할 수 있음
- * 등기 가능한 권리: 상표권, 저작권, 전리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

세관이 모조품을 적발하면 법원의 명령 없이도 세관 스스로 모조품 몰수할 수 있음

품질기술감독국을 통한 행정단속

💡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도 보호가 가능!**

품질기술감독국의 단속 대상 행위

- 산지 위조, 타인의 공장명칭, 주소를 위조하거나 사칭하는 행위
- 인증표지 등의 품질표지를 위조하거나 허위표시하는 행위
- 제품에 가짜를 섞거나, 가짜를 진품으로 위장하거나, 낮은 품질을 좋은 품질로 위장하는 행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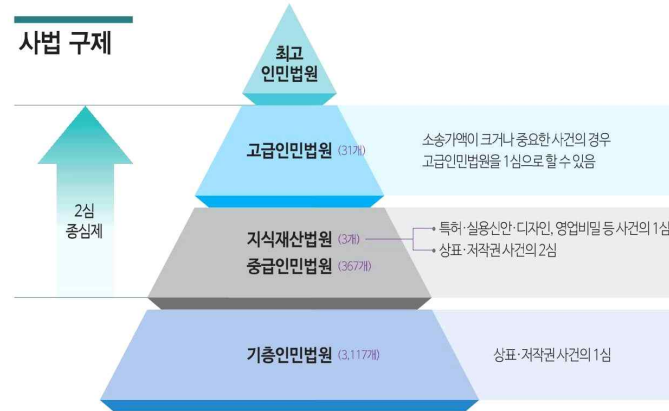
품질기술감독국 통한 행정단속의 실익

- 미등록 권리에 대해서도 품질기술감독국 통한 단속이 가능
-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인체의 건강 및 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따라서, 중국에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조품의 제조, 판매자에 대해서는 중국 형법상의 '저열상품의 제조, 판매죄'를 추궁할 수 있음



사법 구제



제1심 법원 선택이 중요

중국은 지방보호주의로 인해 자기 지방기업에 우호적인 판결을 하는 경향이 강함
중국의 지방보호주의는 상급심으로 갈수록, 대도시로 갈수록 약해지는 경향
따라서, 가급적이면 북경이나 상해 등 외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대도시를 1심 관할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

침해소송 관할

중국 규정상 침해소송 관할은 '권리침해 행위지 또는 피고의 주소지의 인민법원'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되도록 침해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찾아서 **피고의 주소지가 아닌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

* 권리침해행위지란?

특허, 상표 등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된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 수입 등의 행위의 실시지, 타인의 특허사칭행위의 실시지, 침해행위의 결과 발생지 등



06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을 잘 활용하자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신청대상: 지재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재권 분쟁에 대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 제공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지 원 비 율	지원한도액
수출 사전분석	수출(예정) 또는 전시회 참가 제품의 기존 해외 IP 권리 침해 여부 분석 및 회피설계안 마련 등	중소 70% 중견 50%	28백만원 20백만원
특허보증 대응	구매자의 특허보증요구 대응을 위해 기존 IP권리 침해 여부 분석, 특허보증조항 등 검토	중소 70% 중견 50%	28백만원 20백만원
라이선스 전략	경쟁기업 또는 자사의 IP권리 분석을 바탕으로 라이선스 전략을 제공하여 소송 등으로 분쟁확대 예방	중소 70% 중견 50%	28백만원 20백만원
분쟁확대 예방	경고장 수령 시 소송 등의 분쟁확대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중소 70% 중견 50%	28백만원 20백만원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

신청대상: 중국·ASEAN 지역 진출(예정)인 국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상표·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침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지 원 비 율	지원한도액
예 방	국내 상표의 현지화 네이밍 컨설팅, 경쟁사 상표분석·분쟁정보 제공	중소 70% 중견 50%	5백만원
대 응	해외 무단 선 등록 상표 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 무효, 회수(협상) 지원	중소 70% 중견 50%	15백만원
	모조품 제조, 판매에 대한 권리행사 지원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및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
- www.kipra.or.kr '알림마당' → '사업공고'
-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
- www.ip-navi.or.kr '지원사업' → '사업공고'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분쟁지원팀
- 전화: (02) 2183-5871~8
- e-mail: ipkipra@kipra.or.kr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신청대상: 지재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재권 분쟁 위험 분산을 위해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지원

* 지재권 침해소송 및 권리방어, 피소 시 대응 등 법률비용 보장

지재권 소송보험 상품별 지원내용

구 분	일반 지재권 소송보험	NPEs 방어전용 소송보험
지 원 대 상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정부지원율 (지원한도)	총 보험료의 중소기업 70%, 중견 50% (30백만 원)	총 보험료의 중소기업 80%, 중견 60% (30백만 원)
보 험 기 간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보 상 범 위	연간 최대 5억 원 한도 (공동부담비율 20%)	연간 최대 5억 원 한도 (공동부담비율 20%)
보 장 지 역	전 세계	전 세계
지 원 상 품	(기본)소제기, (선택)권리보호, 피소대응	피소대응

온라인 침해조사 모니터링

신청대상: 해외 진출(예정)인 국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구분	IP-DESK 소개국가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지원건	신청기업별 연간 3건(1건당 1개 상표, 1개 상품)					
모니터링 대상	중국 알리바바 그룹 계열 오픈마켓					
기본지원	신청상표에 대한 알리바바 그룹 계열 오픈마켓 내 상표 사용현황 모니터링 조사					
연계지원	① IP-DESK 침해조사 지원사업 진행 ② 모조품 대리신고를 통한 오픈마켓 판매계시물 삭제(보호협회)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및
온라인 침해조사 모니터링

신청방법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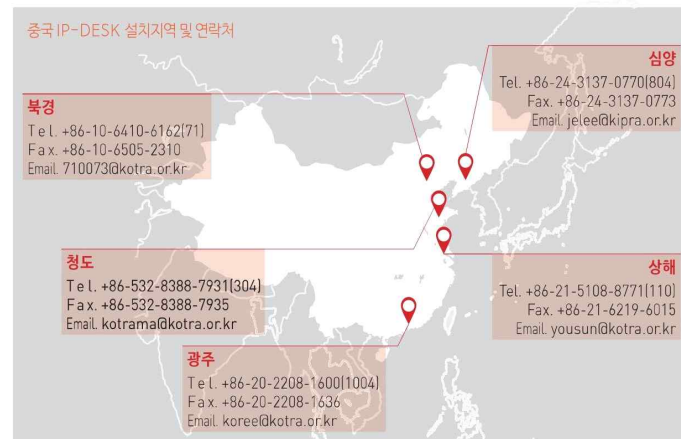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원팀
- 전화: (02) 2183-5891~5
- e-mail: kipraglobal@kipra.or.kr
- 주소: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4층)

중국에 설치된 IP-DESK 에서의 지재산 보호 지원

신청자격 :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중소·중견 기업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 (예정) 중인 자

지원 서비스

구분	세 부 내 용
상표·디자인 출원	• 현지 소요 비용의 50%, 최대 300\$/건 이내 지원 (1개 업체당 8건 이내)
세관 지재산 등록	• 현지 소요 비용의 50%, 최대 300\$/건 이내 지원 (1개 업체당 8건 이내)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 현지 소요 비용의 70% 지원 (1개 업체당 3회) - 1회당 6,000\$(행정단속시 10,000\$) 이내 * 단, 2, 3회차부터 지원비용 각 50%, 30%로 조정
지재산 상담	• 전담 변리사를 통한 지재산 침해상담 및 대응지원 - 전화, e-mail, 내방 및 현지 출장 지원
모조품 식별세미나	• 신청 기업이 직접 현지 단속공무원 대상으로 자사의 진품 식별 방법을 설명하는 세미나
공무원 초청연수	• 현지 지재산 단속 공무원을 국내에 초청하여 희망하는 기업 방문 및 기업간담회 개최
설명회	• 현지 진출기업 및 집행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IP-DESK 사업 안내 및 주요 자원제도 소개



중국진출 기업을 위한 중국 지재산 활용 및 보호 가이드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국제협력과 Tel. 042-481-5070
<http://www.kipo.go.kr>